

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총규모는 총 3개 기금 3,3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2백만원이 감 되었음.
- 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7년예산액	전년도예산액	증감(△)
합 계	3,386,937	3,438,637	△51,700
평창군식품진흥기금	105,470	95,154	10,316
평창군사회복지기금	2,322,137	2,311,421	10,716
평창군재난관리기금	959,330	1,032,062	△72,732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18조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